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등〉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4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	2
2. 조문별 검토	7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7
(2) 감사담당자 임용, 자체감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	9
(3) 감사결과 통보·처리 및 감사결과 포함사항 등	11
[참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7.
3. 회부연월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소속된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 및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4조의2(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이하 이 조에서 “자체감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

	고, 고발, 변상명령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장·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 및 자체감사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함)·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정의하고 있음¹⁾.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

지방의회의 경우 별도의 자체감사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감사도 「공공감사법」에 따라 집행기관 자체 감사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자체감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2021. 1. 12.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었고²⁾³⁾, 「지방공무원법」은 2021. 10. 8.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주요내용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3)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⁴⁾⁵⁾.

둘째, 「공공감사법」은 교육감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⁶⁾)에 자체 감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에 관한 규정은 「공공감사법」의 자체감사기구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4) 법률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5)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조문별 검토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공공감사법」	개정안
자체감사 기구의 설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제104조의2(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이하 이 조에서 “자체감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
감사기구장 의 임용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5항을 준용한다.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u>	
--	---	--

개정안은 「공공감사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지방의회의 자체감사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에게 자체감사기구 설치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공공감사법」과 차이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공공감사법」과 동일하게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임용제청 시 그 적격 여부를 합의제 기구를 통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감사담당자 임용, 자체감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

	「공공감사법」	개정안
감사담당자 임용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자체감사 계획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⑤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

	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	--	---

개정안은 감사담당자의 임용,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하여 「공공감사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공공감사법」은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및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인지 또는 개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지를 고려하여 위임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공감사법」과 달리 조치요구의 한계, 대상기관의 조치요구 이행의무,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자체감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3) 감사결과 통보·처리 및 감사결과 포함사항 등

	「공공감사법」	개정안
감사결과 통보·처리	제23조(감사결과와 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 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포함사항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변상명령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사항의 위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장·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 및 자체 감사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

개정안과 「공공감사법」은 모두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감사법」은 해당 결과를 감사원에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감사결과에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및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공공감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 명령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장·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 및 자체감사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인지 또는 개별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 여

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통령령 또는 의회규칙 등 위임의 형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⁷⁾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향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 증원 등 제반여건이 마련되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

7)[참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

[참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

□ 광역의회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4	148	105	110	125	97	77	55	319	124	89	113	100	122	138	135	142

□ 기초의회

(단위: 명)

연 번	지역/ 구분		직원 정원	연 번	지역/ 구분		직원 정원	연 번	지역/ 구분		직원 정원	연 번	지역/ 구분		직원 정원
1	서울	종로구	28	26	부산	중 구	12	51	인천	중 구	17	76	경 기 도	수원시	52
2		중 구	23	27		서 구	10	52		동 구	16	77		성남시	39
3		용산구	29	28		동 구	13	53		미추 홀구	21	78		고양시	56
4		성동구	28	29		영도구	14	54		연수구	21	79		부천시	43
5		광진구	27	30		부산 진구	27	55		남동구	25	80		용인시	41
6		동대문구	30	31		동래구	19	56		부평구	27	81		안산시	37
7		종량구	33	32		남 구	22	57		계양구	19	82		안양시	36
8		성북구	35	33		북 구	20	58		서 구	23	83		남양 주시	32
9		강북구	31	34		해운 대구	23	59		강화군	14	84		의정 부시	26
10		도봉구	32	35		사하구	17	60		옹진군	13	85		평택시	34
11		노원구	38	36		금정구	16	61	광 주	동 구	15	86		시흥시	25
12		은평구	33	37		강서구	14	62		서 구	24	87		화성시	38
13		서대문구	33	38		연제구	18	63		남 구	19	88		광명시	22
14		마포구	29	39		수영구	15	64		북 구	28	89		파주시	26
15		양천구	33	40		사상구	18	65		광산구	21	90		군포시	21
16		강서구	38	41	대구	기장군	16	66	대전	동구	19	91		광주시	22
17		구로구	38	42		중 구	15	67		중구	23	92		김포시	3
18		금천구	24	43		동 구	25	68		서구	33	93		이천시	17
19		영등포구	31	44		서 구	19	69		유성구	22	94		구리시	17
20		동작구	32	45		남 구	17	70		대덕구	19	95		양주시	22
21		관악구	36	46		북 구	28	71	울 산	중구	21	96		안성시	18
22		서초구	31	47		수성구	29	72		남구	21	97		포천시	15
23		강남구	34	48		달서구	30	73		동구	16	98		오산시	17
24		송파구	42	49		달성군	17	74		북구	18	99		하남시	19
25		강동구	33	50				75		울주군	22	100		의왕시	17

연 번	지역/ 구분		직원 정원	연 번	지역/ 구분		직원 정원	연 번	지역/ 구분		직원 정원	연 번	지역/ 구분		직원 정원
101	경 기 도	여주시	17	135	충 북	단양군	16	169	경 북	광양시	25	203	경 북	고령군	10
102		동두천시	13	136		천안시	44	170		담양군	17	204		성주군	13
103		양평군	15	137		공주시	22	171		곡성군	13	205		칠곡군	18
104		과천시	19	138		보령시	23	172		구례군	14	206		예천군	12
105		가평군	16	139		아산시	26	173		고흥군	18	207		봉화군	11
106		연천군	16	140		서산시	22	174		보성군	19	208		울진군	12
107	강 원 도	춘천시	35	141	충 남	논산시	18	175	전 남	화순군	18	209	경 남	울릉군	12
108		원주시	31	142		계룡시	15	176		장흥군	13	210		창원시	61
109		강릉시	24	143		당진시	24	177		강진군	15	211		진주시	31
110		동해시	16	144		금산군	15	178		해남군	18	212		통영시	20
111		태백시	13	145		부여군	15	179		영암군	12	213		사천시	21
112		속초시	15	146		서천군	14	180		무안군	17	214		김해시	29
113		삼척시	17	147		청양군	13	181		함평군	14	215		밀양시	19
114		홍천군	12	148		홍성군	18	182		영광군	14	216		거제시	25
115		횡성군	11	149		예산군	17	183		장성군	13	217		양산시	26
116		영월군	14	150		태안군	15	184		완도군	17	218		의령군	15
117		평창군	14	151	전 북	전주시	46	185	경 북	진도군	12	219		함안군	18
118		정선군		152		군산시	31	186		신안군	19	220		창녕군	17
119		철원군	16	153		익산시	34	187		포항시	46	221		고성군	17
120		화천군	15	154		정읍시	26	188		경주시	33	222		남해군	15
121		양구군	15	155		남원시	30	189		김천시	27	223		하동군	16
122		인제군	13	156		김제시	23	190		안동시	21	224		산청군	14
123		고성군	15	157		완주군	18	191		구미시	35	225		함양군	13
124		양양군	11	158		진안군	15	192		영주시	23	226		거창군	17
125	충 북	청주시	52	159	전 남	무주군	15	193	경 북	영천시	17	227		합천군	15
126		충주시	25	160		장수군	17	194		상주시	22				
127		제천시	23	161		임실군	18	195		문경시	18				
128		보은군	17	162		순창군	16	196		경산시	26				
129		옥천군	18	163		고창군	20	197		군위군	13				
130		영동군	17	164		부안군	20	198		의성군	18				
131		증평군	13	165	전 남	목포시	29	199		청송군	12				
132		진천군	16	166		여수시	34	200		영양군	13				
133		괴산군	17	167		순천시	35	201		영덕군	13				
134		음성군	15	168		나주시	20	202		청도군	11				